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0.

발 의 자 : 서천호 · 우재준 · 김은혜
박충권 · 정성국 · 김정재
김승수 · 이달희 · 강대식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로서 하역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집중호우·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, 해양환경의 보전·관리·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(안 제33조

제4항 신설).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3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해 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u>